



8

정보관리자를 위한 콘텐츠 보호 및 제한법리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박 원 경
한국저작권연구소 소장



목 차

- | | |
|---|--|
| 1. 서 언
2. 정보와 저작권
3. 정보서비스의 법적 범위 | 4. 저작권에이전트 역할의 정보관리자
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안
6. 결 언 |
|---|--|

1. 서언

과거 도서관은 인간의 지적창작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기능에서 출발하여, 인류사회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오늘날 정보가 핵심인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제공의 중심관리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이 정보제공의 중심관리기구의 정보관리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정보안내자 역할에서부터, 정보에 관련된 법과 제도적인 문제점도 원활하게 해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중개자 역할까지 해야할 입장에 있다.

정보관리자가 정보서비스(IS: Information Service)를 할 때, 그 정보내용물, 즉 콘텐츠(Contents)의 법적 권리 및 제한에 대한 지식 없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용자에게 법적 침해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나, 정보관리자 스스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행위를 하게 된다. 또한, 지나치게 법적인 문제로 위축되어 이용자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까지 차단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관리자를 위한 콘텐츠 보호와 제한에 관한 정보관련법의 연구가 무척 중요하다. 콘텐츠 보호와 제한에 관한 법은 표현물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 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며, 그 경제적 가치인 콘텐츠의 재산적인 부분은 저작권법에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정보관리자를 위한 콘텐츠 보호와 제한 법리를 논의하고자 한다.

2. 정보와 저작권

농경사회에서는 토지와 그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물인 농산물이 가장 중요한 재화이며, 산업사회에서는 공장이나 산업체의 생산품인 공산품이 중요한 재화였다. 정보사회의 핵심적인 재화는 정보이다.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화로 인식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형태가 있는 농산물이나 공산품과 달리, 정보는 무형의 재산권이라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쉽고, 죄책감도 상대적으로 적어 범법행위가 더욱 빈발하고 있다.

무형의 재산권은 대륙법체계에서는 무체재산권이라고 하며 영미법체계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지적재산권은 산업 및 공업 발달을 위하여 독특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주의 독창적인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을 보호하는 저작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은 이미 산업사회에서 인지되어 왔지만, 저작권은 어문, 음악, 연극, 미술, 사진, 영상, 도형,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내용(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권리로 정보사회의 핵심 재화이다. 저작권법은 이 무형정보의 경제적 대가로 저작재산권과 그 정보의 정신적 대가 및 유통 시 표현의 손상을 막기 위한 동일성유지, 성명표시 및 공표에 관한 저작인격권을 명시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

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이 있고 2000년 1월부터 전송권(저작권법 제18조의 2)이 새롭게 추가되어 디지털 전송에 대한 저자의 권리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3. 정보서비스의 법적 범위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문자, 그림, 영상, 음성, 음악 등이 bit 정보형태로 되어 웹을 통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다. 정통적인 매체가 변화하고, 다시 매체간의 접목, 융합현상이 이루어진다. 출판, 잡지, 신문 등 인쇄매체는 인터넷에서 다시 전자출판물로 변화하고, 기존의 라디오, TV 방송도 다시 인터넷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출판물은 크게 2가지로, 팩 키지 형태로 나온 전자책과 컴퓨터를 통하여 전송되는 도서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출판물을 전산화한 콘텐츠들과, 더욱 넓게는 모든 인터넷상 내용물을 멀티미디어물로 볼 수 있어 내용물(콘텐츠) 표현형태의 무구분 현상이 일어난다. 이제 인쇄매체, 방송매체, 통신매체의 구분자체가 의미가 없이 하나의 혼합미디어, 멀티미디어가 되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내용에 관련 된 법리는 간단하지 않다. 기존미디어법은 각 미디어에 따라 그 규제와 제한 정도와 방식이 모두 다르며 특히 방송과 통신법은 제한법리가 크게 다르다. 방송의 희소성과 침투성 영향으로 엄격한 규제를 하나, 이에 비해 통신은 전화처럼 쌍방향성을 가지고 즉시 반론권이 부여됨으로 보다 덜 제한적이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법적 적용은 복잡하고 선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정보 재산권인 저작권은 그 권리의 특성이 기존 물권과 다른 준물권적 성격을 지니며, 공공성, 가분성, 유한성을 가진다. 정보관리자들은 이러한 권리의 특성에 의하여 정보서비스 하는데 어려움이 따름으로 이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1) 공공성

저작권법에서 공공성을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제7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 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

1. 헌법·법률·조약·법령·조례 및 규칙(개정 2000. 1. 12)
2.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개정 2000. 1. 12)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개정 2000. 1. 12)

5.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6.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이것은 저작물의 구성 요건을 다 구비하고 있지만 그 용도로 보아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관리자는 이에 관련된 정보는 사용허락이나 저작권 사용료 지불 없이, 이용자에게 전체적으로 몇 부를 요구하여도 모두 제공하여도 되는 범주의 정보이다.

공공성의 이유로 제6절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조항(제22조~제35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그 중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 관한 것이 있다.

제 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개정 1994. 3. 24, 2000. 1. 12)
 - ①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 ②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 등은 이 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0. 1. 12)

저작권법 제 2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 (복제 할 수 있는 시설) 각 호 1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을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를 보존, 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2) 기분성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라고 할만큼 저작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저작권법 제5절 제16조~제21조에 명시된 저작재산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달리 기분성에 의하여 복제권(제16조), 공연권(제17조), 방송권(제18조), 전송권(제18조의 2), 전시권(제19조), 배포권(20조),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제21조)이 있다.

일반도서 출판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저작권자는 다음과 같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먼저 일반도서를 제작하여 판매하려면 복제권과 배포권의 계약을 해야 한다. 복제권과 배포권을 출판권이라고 하며 출판하고자 하는 자는 출판권 계약을 통하여 제작과 판매가 가능하다. 다시 이 도서를 외국에서 그 번역본을 제작하려면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사용하는 계약을 해야 한다. 또 이것을 TV방송에서 연속극으로 제작하든, 영화로 제작하든 모두 계약을 하여야 가능하다.

2000년 1월 12일 개정저작권법(법률 제6134호)에는 전송권에 의하여 PC통신과 인터넷 상 전송계약도 할 수 있다. 전자출판물의 컨텐츠는 대부분 기존 종이책(일반도서)이며, 컨텐츠가 종이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자출판물화 되는 경우는 아직 1% 정도이다. 전송권 계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3가지 형태가 있다.

(1) 삼자계약 (저작자-출판사-정보서비스업체)

가장 일반적인 계약 형태로 저작자와 출판사간의 출판권(복제권과 배포권)계약에 전송권을 추가하거나 별도 전송권 계약을 한다. 이에 출판사는 정보서비스업체간의 계약을 하게 되나 각 도서별 개별계약이 아닌 여러 도서에 대한 포괄계약을 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정보서비스업체에 지나치게 독점권을 부여하거나, 출판사가 이미 저작권을 저작권자와 포괄 계약한 경우에는 전송권 양도계약을 하기도 한다.

(2) 양자계약 (저작자-정보서비스업체)

출판사가 제외된 계약 형태로 종이책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다. 정보서비스업체가 출판사와 콘텐츠계약의 어려움으로 직접 저작자와 전송권 계약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전자출판물이 되는 경우이라 출판사의 편집기능이 생략되는 것이지만, 콘텐츠자체를 전자출판물로 보는 광의의 출판물에 관한 개념에 포함 할 수도 있다. 이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제공되는 컨텐츠는 정보생산자가 그대로 정보사용자에게 전달되며, 단지 컨텐츠를 전화 교환수처럼 정보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것에 불가한 것이 될 수 있다. 전문적인 사이버소설, 신문, 잡지 등이 속출하고 있지만 사이버스페이스 특성상 음란물, 폭력물,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 반사회적이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컨텐츠들이 난무하고 방지하게 된다. 출판단계를 거치는 것은 전문적 편집과정을 통한 컨텐츠는 정제되어 유통하고 특히 편집행위를 한 출판사는 유해한 컨텐츠에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어 사이버스페이스

에서 콘텐츠의 법적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 발달과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러한 형태의 콘텐츠계약은 급증할 것이다.

(3) 무계약

저작재산권의 시간적 보호기간이 지나 권리 소멸된 일반도서의 콘텐츠를 정보서비스하는 경우는 계약이 필요하지 않다. 공익을 위하여 유한성을 두어 권리소멸을 시킨 만큼 많은 활용은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시간적 유효성이 생명인 정보사회에서는 자칫 쓰레기 정보로 취급되기 쉽지만 새로운 이용자를 겨냥한 콘텐츠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보관리자의 역할로 기대할 만하다.

이러한 하나의 저작권을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권리 행사가 가능하여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디지털정보가 이러한 복잡한 권리와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출판물이 변화되거나 다른 영상이나 음악 등과 혼합, 융합되어 전송되는 경우에 정보관리자는 법적 혼란에 대처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면책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3) 유한성

저작재산권은 일반 물권과 달리 권리보호의 시간적 유한성을 지니고 있다. (제7절 제36조~제40조) 저작물 창작시점에서부터 저작자 사후 50년간 권리가 부여되고 그 뒤에는 권리가 소멸(public domain)된다. 다만 저작자 사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공저의 경우에는 최후 저작권자를 기준으로 기산하며, 단체명의 저작물은 공표를 기준으로 50년간 보호한다. 다만 창작하고 50년 이내에 공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보호한다. 무명이나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후 50년간 보호 하나 이미 사후 50년이 지난 것은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정보관리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요구 할 때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 내에 있는 것인지, 이미 권리가 소멸된 것인가에 따라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권리가 소멸된 것은 자유롭게 정보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존속기간 내에서는 저작권법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기준에 따라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에게 1인 1부 부분 복사 서비스만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권 사용료 지불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다.

4. 저작권에이전트 역할의 정보관리자

공정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저작권 사용계약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법적 선결과제가 너무 많아 쉽지 않다. 그러나 전문 정보센타에서는 반드시 해결하여야만 정보매개기구의 역할과 정보사회의 주도적인 정보관리자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대되는 것은 정보관리사가 저작권 중개계약을 할 수 있는 저작권에이전트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보를 생산하는 자와 정보를 소비하는 자를 위한 시장 논리에 의하여 중간매개자가 필요하고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그 시장은 활성화된다. 저작권법 제6장 제78조~제80조의2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저작권신탁업무와,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무가 있다(2000. 1. 12).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하는 저작권에이전트는 정보를 가진 자와 정보 이용자간에 적정한 사용계약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서로 조정하여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국제간 저작권 계약만을 하는 것이나, 특정저작권협회 등의 업무라는 고정 관념이 있지만 결국 저작권 사용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보관리자의 중요한 업무가 되어야 한다.

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안

2002년 국내 정보서비스 환경은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디지털콘텐츠의 육성을 골자로 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권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은 부처협의 등의 과정은 끝내지 못하였으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안을 확정하고 정기 국회에 상정하였다. 정기 국회에서 본 회의에 통과되면 2002년 7월부터 정식 발효하게 된다.

정당한 권리없이 온라인 콘텐츠를 복제·전송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함으로써 온라인 콘텐츠 제작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구제절차와 형사처벌을 규정하였다.

디지털콘텐츠產業育成法(案) (기준일 2000. 4. 9)

제 1조 (목적) 이 법은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기술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유·무선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정보 등을 말한다.
2. “디지털콘텐츠물”이라 함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유·무선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3. “디지털콘텐츠산업”이라 함은 디지털콘텐츠물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등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디지털화”라 함은 원자료 또는 원정보를 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제작·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 7조 (금지되는 행위 등)

- ① 누구든지 최초로 디지털화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디지털콘텐츠사업자(디지털콘텐츠 관련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할 목적으로 상당한 인적·물적 노력을 들여 대한민국 내에서 디지털화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디지털콘텐츠물을 정당한 권한없이 디지털 상태로 복제·배포하거나 공중전달(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는 허용된다.
 1.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복제하는 행위
 2.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물을 복제하는 행위
 3.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된 디지털콘텐츠물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
 4.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디지털콘텐츠물을 오로지 당해 시설 내에 있는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행위
 5. 디지털콘텐츠물을 제작한 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 제 1항의 디지털콘텐츠물에는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가지는 외국인(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디지털화한 디지털콘텐츠물을 포함한다.

제 12조 (정보통신망사업자의 의무)

- ① 디지털콘텐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전자게시판을 포함한다)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송신을 가능하게 하는 자(이하 “정보통신망사업자”라 한다)는 합

- 리적인 이유없이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또는 타인의 디지털콘텐츠물을 공중전달하는 자 (이하 ‘디지털콘텐츠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정보통신망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물의 유통에 따라 유·무선 통신요금수입이 증가되는 경우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통신요금수입 증가분의 일정액을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3조 (정보통신망사업자의 책임)

- ① 정보통신망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1. 디지털콘텐츠사업자등이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물이 제 3자의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제 7조 제 1항에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
 2. 디지털콘텐츠물의 공중전달을 저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 ② 디지털콘텐츠사업자등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물에 대하여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소명하거나, 제8조에 의해 중지청구를 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그 삭제나 중단을 요구한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사업자는 당해 디지털콘텐츠물의 제공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 ③ 정보통신망사업자가 제2항의 중단을 한 경우라도 중단 시에 당해 디지털콘텐츠물이 제3자의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는 제 7조 제 1항의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중단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 18조 (디지털콘텐츠사업자등의 권리와 의무 등)

- ① 디지털콘텐츠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주소로 개별적으로 송신할 의무가 있는 자는 당해 디지털콘텐츠물의 이용자가 지정하는 컴퓨터나 이용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도달한 때에 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디지털콘텐츠사업자등이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디지털콘텐츠물이 이용자의 컴퓨터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불도 달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
- ② 서로 결합되어야만 완전한 디지털콘텐츠로 될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디지털콘텐츠물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들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전달되는 경우에는 모든 부분이 전달되어야 도달한 것으로 본다. 디지털콘텐츠사업자등은 일부분이 도달되었다는 이유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일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계약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디지털콘텐츠물이 제작 당시부터 결함이 있거나 기술적 보호조치 등이 부가됨으로써 디지털콘텐츠사업자등의 협력이 없으면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디지털콘텐츠사업자등이 당해 장애를 제거하거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자에게 알려주어 정상적인 이용을 할 수 있게 된 때에 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 22조 (공공정보의 이용활성화)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디지털콘텐츠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에 대한 민간부문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개대상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조건·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개대상 공공정보에 대한 민간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제 2항의 공공정보 이용규정과 관련하여 표준 공공정보 이용지침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26조 (집중관리단체의 설립등)

- ① 디지털콘텐츠사업자등은 자신의 디지털콘텐츠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처리·이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집중관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단체의 설립, 허가의 취득 및 그 취소, 단체의 감독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8조 (디지털콘텐츠물의 공중전달등의 죄)

- ① 제 7조 제 1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죄는 제 8조 제 2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제 7조 제 1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제 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본법에 의한 보호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6. 결 언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할 만큼 고도의 정보사회로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개인, 기업, 국가조차 그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생존과 번영이 위협 당하게 되며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변화와 혼돈이 일어나고 있다.

이 혼란스러운 정보사회에 질서를 위한 정보관련법은 정보보호법, 정보규제법, 정보촉진법 등이 균형 있게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보사회가 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보관리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서비스에서 정보 그 가치 자체인 콘텐츠의 법적 보호 정도와 권리의 제한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업무 수행에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정보사회의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당당한 수문장(Gatekeeper)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문헌정보학의 이론과 정보커뮤니케이션 및 정보질서를 부여하는 정보관련법을 정보관리자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접목한다면 정보사회를 당당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